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85

발의연월일: 2021. 3. 10.

발 의 자 : 이헌승 · 권영세 · 김도읍

金炳旭・김성원・서병수

이양수 · 이주환 · 전봉민

조명희 · 주호영 · 하영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중 1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보상 관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지위와 업무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 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

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10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임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1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	제3조(등록의무자)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	
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	
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	
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	
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	
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12
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	
관단체의 <u>임원</u>	임직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